

울산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단10039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용주, 김지은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변론 종결 2023. 1. 11.

판결 선고 2023.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 7. 26. 접수 제1065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3. C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위 금원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 7. 26. 접수 제106550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9. 3. 15.경 C에게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3. 15.경 C에게 9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던 사실, C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며 담보를 확보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고, 2018. 7. 23.경 C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면서 거래내역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2018. 7. 26.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C가 2018. 8. 16.경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만약 위 주장에 따르면 당시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었던 C가 원고의 부탁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거나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대여금은 80,000,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150,000,000원인데, 이 사건 대여일로부터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8. 8. 16.경 원고를 대신하여 C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2019. 3. 15.경 C에게 9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1. 8.경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거나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변제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 이후 원고가 C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변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성

별지